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12>

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사업자등록번호 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)	
	주된 영업소의 소재지	
취급 유종		
사업개시 예정일	년 월 일	
기타	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(용제판매소)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투자내용 확인 서류(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.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 수	→	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	→	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대장 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